

국내대학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규정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제정 | : 2005년 11월 28일 |
| 2차 개정 | : 2008년 12월 08일 |
| 3차 개정 | : 2009년 10월 22일 |
| 4차 개정 | : 2010년 11월 17일 |
| 5차 개정 | : 2013년 04월 01일 |
| 6차 개정 | : 2014년 10월 20일 |
| 7차 개정 | : 2015년 11월 05일 |
| 8차 개정 | : 2019년 11월 04일 |
| 9차 개정 | : 2021년 11월 03일 |
| 10차 개정 | : 2023년 11월 18일 |
| 11차 개정 | : 2024년 11월 27일 |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국내 우수대학 및 대학원에 수학 또는 진학하는 자 중 바람직한 품성을 갖고 창의성 및 학업성적이 뛰어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문, 사회, 과학, 문화 등 학문의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.

제2조(기대효과)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

- ① 우수인력의 발굴 및 면학에 진력하도록 한다.
- ② 장학생의 학업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.
- ③ 관정재단 장학생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한다.
- ④ 장학생간 유대와 동문의식을 제고한다.

제3조(선발대상)

-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창의성이 탁월하며 바람직한 국가관, 세계관 및 윤리관을 가진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, 본 재단이 지정한 대학의 총장이 추천한 학생
- ②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), 북한일탈주민, 다문화 가정, 기타

-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정한 학생
- ③ 기타 본 재단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정한 학생
 - ④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(국외 영주권자나 이중국적 보유자는 제외)로 한다. 고등학교라 함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이 인정하는 고등학교로서,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해당 학교 과정의 교과를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. 단, 외교관, 주재원 등 학부모의 국외근무로 부득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⑤ 선발연도를 기준으로 학부과정에 한하여 만 24세로 연령을 제한한다. 단, 군필자의 경우는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.
 - ⑥ 석사·석박통합·박사과정의 경우는 일반대학원 진학자에 한한다

제4조(선발비율)

- ① 계열별 비율은 자연이공계열 80%, 인문사회계열(예능계 포함) 20%로 한다.
- ② 과정별 비율은 학부과정 50%이상, 대학원 과정 50%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대학별 선발인원)

대학별 선발인원 배정은 본 재단의 목적사업비 규모나 대학의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다만 대학이 추천하는 학생의 경제환경과 품성 및 성적수준에 따라 대학별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선발방법)

- ① 학부생은 매년 11월 5학기 진학예정자(편입생 제외)에 한

하여 대학으로부터 선발인원의 1.5배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선발소위원회가 서류전형으로 1.2배수 이상을 1차 선정하고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선발위원회가 면접으로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.

- ② 대학원생은 매년 11월 1학기 중이거나, 익년 입학 진학예정자에 한하여 입학 시 대학으로부터 선발인원의 1.5배수를 추천받아 장학생선발소위원회가 서류전형으로 선정하고 이사장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면접시험으로 최종 선발한다.
- ③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선발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 6조 ①,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학교나 학과의 특수성, 본인의 우수성, 장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특별 선발할 수 있다.

제6조1(장학금 수혜기간)

- ① 제6조 제①항 및 ②항에 의거 선발한 학부, 대학원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회수를 총4회로 한다. 다만 조기 졸업 시 졸업 시까지로 한다.

제7조(장학금 지급액)

- ① 이 규정 제 3조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기당 최대 600만원(년 1,200만원)으로 한다.
- ② 이 규정 제3조 제②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지급액을 정한다.

제8조(장학생의 의무)

- ① 본 재단 장학생은 본 재단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본 재단 장학생간의 교류 및 유대강화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- ③ 본 재단 장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력 하여야 하며 본 재단 및 본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- ④ 본 재단 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혜 받는 기간 동안에는 타장학금(교내,교외)을 중복으로 수혜를 받지 말아야 한다. 단, 근로 및 연구 등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장학실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⑤ 만약 제①항내지 제④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정지, 기 지급된 장학금의 회수, 장학생 자격의 박탈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.

제9조(장학실무소위원회)

본 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“장학실무소위원회”를 둔다.

제10조(보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각종 내규와 재단 “장학실무소위원회”의 심의결과에 따른다.

이 규정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